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120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0. 2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3,298,4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298,4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원고는 D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 원금 합계 18,376,119원을 2019. 10. 15.경부터 연체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21. 6. 23. 'D은 원고에게 25,115,105원과 그 중 18,376,1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21. 7. 13. 확정되었다.

③ 2023. 10. 5.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33,298,468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① D은 2015. 7. 9. E와 E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2015. 11. 4.부터 2017. 11. 4.까지 보증금 1억7,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다음, D이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으로부터 2회에 걸쳐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은 합계 1억3,600만 원과 D의 처인 피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전세자금으로 차용한 4,000만 원으로 위 보증금 1억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D이 위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8. 8. 29. 'E는 D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이 2018. 9. 15. 확정되었다.

③ D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H), 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2,400만 원에 매수하여 2020. 11. 20. 그 대금을 위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낸 후 2020. 11. 2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한편, D은 2020.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하고, 2020.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1) 적극재산 D이 위 경매절차에서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매각대금은 D과 D의 처인 피고가 차용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냈으므로 D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만 D의 적극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 잔액 4,600만 원(= 1억7,000만 원 - 1억2,4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그 1/2만 D의 적극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D의 적극재산액은 1억7,700만 원(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8,850만 원과 위 보증금반환채권 잔액 4,6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2,300만 원, 합계 1억1,150만 원이다.

2) 소극재산 D은 2019. 10. 2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은 D에 대하여 2020. 6. 2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2019개회1030216), 2021. 4. 5.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D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의 총액은 263,743,699원이고, D은 2020. 7. 30.부터 60개월 간 매월 30일에 32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D이 변제계획대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액은 250,943,699원(= 263,743,699원 - 12,800,000원)에 이른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D이 F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3,6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F은행에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② 이 법원은 2021. 12. 15. D의 F은행과의 대출약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신용보증약정이 D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가 D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21. 10. 21. 위 판결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권최고액 140,9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D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1/2 지분의 한도에서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D의 사해의사

D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1/2 지분의 한도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D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중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D은 개인회생절차에서 2020. 7. 30.부터 60개월 간 매월 30일 32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른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한도에서는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인 8,8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33,298,4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3,298,4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이원신

별지